

8. 租稅減免規制法中 改正法律(案) 立法豫告

財政經濟院公告 第1997-36號 1997. 5. 7

주 요 골 자

- 가.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의 20퍼센트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창업후 2년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
- 나.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기 12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1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을 법인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 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 라. 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 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후 2년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 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